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의거, 구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된 거주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4년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3일

구 리 시 장

1.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급일”까지 조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주소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 계약기준: 구리시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계약에 한하며,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간의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기준: 부부 중 1인이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잔액이 2억원 이하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평가 시 배점 차등 있음)

2.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 예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 <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용자를 받은 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 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 기수혜자
-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자
 -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출받은 소재지 및 임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자
-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붙임3. 유의사항 '바' 참조)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천원 미만 절사)
 -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가능
- 사업 규모: 60,000천원 (예산 소진 시 까지)

4.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 건수가 사업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상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 항목 별 점수가 ①→②→③→④ 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 배점표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배점	평가 요소
① 자녀 수	가. 3인 이상	7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상 자녀
	나. 2인	5점	
	다. 1인	3점	
② 임차보증금	가. 1억 5천만원 이하	5점	※확정일자 날인된 임차계약서상 계약 금액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함.
	나.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4점	
	다.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	3점	
	라.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점	
	마. 3억원 초과	1점	
③ 부부 합산 소득	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3점	※2023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으로 평가(붙임1, 2 참조)
	나. 기준 중위소득 160퍼센트 이하	2점	
	다. 기준 중위소득 170퍼센트 이하	1점	
④ 구리시 거주기간(연속)	가. 10년 이상	1점	※ 전입신고일 기준(부부 중 1인)
	총점	16점	※ 최대 16점

5. 구비서류

서류명	제출 시 확인사항	발급처
①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인(대출자) 명의	
②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별지 1호 서식(신청서) - 별지 2호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 시청 홈페이지
③ 주민등록표 등본	- 부부 모두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④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⑤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모두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 제출
⑦ 금융거래확인서 - 공고일 기준	[금융거래확인서 표시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주택」, 「임차」, 「전세」 등 보증금 마련 용도 -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출명,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 ※ 지원 제외 대상 - 「신용·일반대출」 용도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	-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직인날인必) ※ 제출된 금융거래확인서만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및 대출잔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서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⑧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사실 없음” 증명	- 2024년 기준 - 부부 모두 - ‘전국’,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행정복지센터 - 시청 세정과 - 위택스(www.wetax.go.kr) ※ 미과세증명서(O), 과세증명서(X)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3년 기준 - 부부 모두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 정부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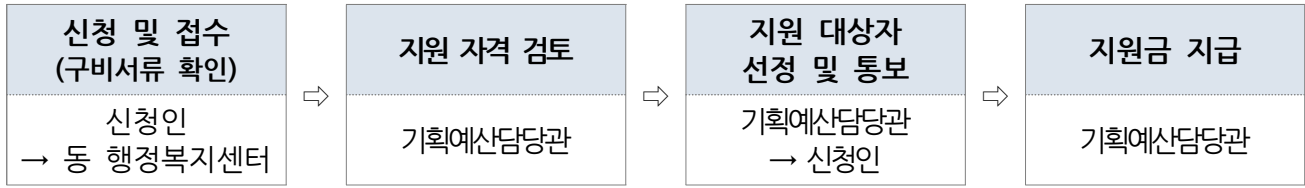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됨.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없음.

6.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기간: 2024. 4. 15.(월) ~ 4. 26.(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불가)
- 통보일: 2024. 5월 마지막 주
- 지급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사업 추진 절차



○ 문 의: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031-550-2729)

※ 구리시 행정동별 접수 담당자(수정)

갈매동	☎ 031-550-8986	수택1동	☎ 031-550-8497
교문1동	☎ 031-550-2664	수택2동	☎ 031-550-2667
교문2동	☎ 031-550-2695	수택3동	☎ 031-550-8716
동구동	☎ 031-550-8475	인창동	☎ 031-550-8514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89,000	134,671	80,190	135,906
2인	6,261,000	224,280	177,953	227,972
3인	8,015,000	289,638	254,448	296,718
4인	9,741,000	348,552	317,019	360,818
5인	11,383,000	422,318	400,222	453,848
6인	12,952,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4,476,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000,000	589,232	567,285	659,065
9인	17,52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19,049,000	773,009	716,140	998,828

■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붙임2.

가구원 및 소득 산정 방법

○ **가구원 산정:**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혼부부와 그 부부의 자녀로 한정함.
(직계존속 제외)

(사례1) 주민등록표 상 세대 구성원: 남편, 남편의 모, 아내, 자녀1

☞ 남편, 아내, 자녀1을 가구원으로 산정하여 3인 가구로 본다.

(사례2) 주민등록표 상 세대 구성원: 남편, 아내, 자녀1, 자녀2

☞ 남편, 아내, 자녀1, 자녀2를 가구원으로 산정하여 4인 가구로 본다.

○ **소득 산정:** 신혼부부 2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원칙)

-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부부 모두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산정함.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또는 근로소득)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함.

(사례1) 신혼부부 중 남편, 아내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경우

- 남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120,000원

- 아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100,000원

☞ $120,000 + (100,000/2) = 170,000$ 원으로 산정

(사례2) 신혼부부 중 남편은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아내는 일하면서 제3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제3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 남편의 근로소득: 1,800,000원

- 아내의 근로소득: 2,000,000원

☞ $2,000,000 + (1,800,000/2) = 2,900,000$ 원으로 산정

(사례3) 신혼부부 중 남편은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아내는 일하지 않으면서 제3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제3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 남편의 근로소득: 2,000,000원

- 아내의 근로소득: 0원

☞ 남편의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사례4) 신혼부부 중 남편은 일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제3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아내는 일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제3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 남편의 근로소득: 2,000,000원

- 아내의 근로소득: 1,800,000원

☞ $2,000,000 + (1,800,000/2) = 2,900,000$ 원으로 산정

(사례5) 신혼부부 중 남편은 일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제3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아내는 일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가 제3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 남편의 근로소득: 2,000,000원

- 아내의 근로소득: 0원

☞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소득 산정

붙임3.

유 의 사 항

- 가. 신혼부부 해당 기간(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내에 최대 7년간 지원 가능하나, 기 지원자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직인날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다.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을 경우, 담당자가 임대인 동의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원대상의 대출금 한도는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함.
- 마. 본 사업은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지원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일 이전 대출 상환 완료자는 접수 취하 조치 됩니다.
- 바.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근거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함.
- 사. 마지막 순위자는 예산 잔액을 지급합니다.
- 아. 신청 및 지원 관련 안내는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통보합니다.
- 자.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재사항 착오 · 누락 ·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 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 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구리시장 귀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신혼부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정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대상자의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같음					